

[서식 예]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(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, 채무병합청구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○)
 전화・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되고 김◇◇와 피고 이◇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
 ○. ○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2. 피고 이◇◇는 피고 김◇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3. 피고 김◇◇는 원고에게 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 5. 위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 김◇◇에게 금 15,000,000원을 변제기 20○○. ○○. ○. ○.로 정하여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. 한편, 피고 김◇◇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 ○동 ○○ 대 762㎡(다음부터 위 부동산이라 함)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많은 상태이면서 20○○. ○. ○. 피고 이◇◇에게 시가 금 83,000,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50,000,000원에 매도하고 20○○. ○. ○○. ○○. ○○지방법원 ○○○등기소 20○○. 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○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. 그렇다면 피고 김◇◇와 피고 이◇◇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.

2. 따라서 피고 김◇◇와 피고 이◇◇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, 피고 이◇◇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할 것입니다. 또한 피고 김◇◇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증 명 방 법

1. 갑 제1호증 차용증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

첨 부 서 류



1. 위 증명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2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별지

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762㎡. 끝.



		I	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, 법률행위 있은 날로 부터 5년(민법 제406조 제2항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불복절차 및 기 간	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 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기 타			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「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」이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,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마1156 결정).
- 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